



|  |                |      |            |
|--|----------------|------|------------|
| <br>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br><b>KOREA DMB, Inc.</b> | <b>회 사 규 정</b> | 문서번호 |            |
|  |                | 개정번호 | 01         |
|  | <b>편 성 규 약</b> | 개정일자 | 2006.02.24 |
|  |                | 제정일자 | 2006.02.24 |


## 편 성 규 약

(제정일자 : 2006년 02월 24일)

|   |                |      |            |
|---|----------------|------|------------|
|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br><b>KOREA DMB, Inc.</b> | <b>회 사 규 정</b> | 문서번호 |            |
|   |                | 개정번호 | 01         |
|   | <b>편 성 규 약</b> | 개정일자 | 2006.02.24 |
|   |                | 제정일자 | 2006.02.24 |

- 개 정 이 력 -

|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항목     | 비고 |
|------|------------|----------|----|
| 01   | 2006.02.24 | 규정 전문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r>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br><b>KOREA DMB, Inc.</b> | <b>회 사 규 정</b> | 문서번호 |            |
|  |                | 개정번호 | 01         |
|  | <b>편 성 규 약</b> | 개정일자 | 2006.02.24 |
|  |                | 제정일자 | 2006.02.24 |

## 전 문

방송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을 하여야 한다.

편성·보도·제작에 종사하는 방송인은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편성·보도·제작 종사자들은 이 같은 권리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엄숙히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방송물 제작에 임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

이에, “한국 DMB”는 헌법과 방송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방송의 독립과 편성·보도·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하고자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약은 “한국 DMB”가 내외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한국 DMB”에 근무하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공정방송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행위이며 ‘보도’는 취재 항목들의 선정에서부터 기사작성, 방송물 제작과 뉴스 편집을 거쳐 방송에 이르기까지이며, 그리고 ‘제작’은 기획에서부터 완제품 제작을 거쳐 방송에 이르는 전과정의 행위를 통칭한다.
2. ‘방송편성·보도·제작자’(이하 ‘방송제작자’라 한다)라 함은 “한국 DMB”에 근무하는 자로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종사하거나 ‘뉴스 또는 프로그램’(이하 ‘방송물’이라 한다)의 취재 및 제작에 종사하는 자를 통칭한다.
3. ‘회사’라 함은 “한국 DMB 주식회사”를 말한다.

### 제 3 조 (편성, 편집의 권한과 책임)

|  |                |      |            |
|--|----------------|------|------------|
| <br>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br><b>KOREA DMB, Inc.</b> | <b>회 사 규 정</b> | 문서번호 |            |
|  |                | 개정번호 | 01         |
|  | <b>편 성 규 약</b> | 개정일자 | 2006.02.24 |
|  |                | 제정일자 | 2006.02.24 |

1. 회사의 방송물을 편성, 편집하는 권한은 국민의 알권리로부터 나온다.
2. 편성, 편집은 국민의 건전한 여망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엄숙히 책임을 진다.

#### 제 4 조 (방송의 기본정신)


1. 방송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리와 의무는 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침해 받아서는 안 된다.
2.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국민화합과 국제친선에 이바지해야 한다.
3.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해야 한다.
4.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5. 방송은 사회교육 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보급 및 확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6. 방송은 정부나 정당, 정치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쪽에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 5 조 (방송의 독립성 보장)

1.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외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익집단은 물론 방송조직내의 부당한 간섭과 방송 종사자의 사적 이익으로부터도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회사의 사장은 방송과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부당한 외부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킬 책무를 진다.
3. 편성, 보도, 제작상의 실무권한과 책임은 관련 국장에게 있으며, 경영진은 편성 보도 제작상의 모든 실무에 대해 관련 국장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 제 6 조 (방송 편성의 기준)

1. 유형별 프로그램, 국내제작 프로그램, 외주제작 프로그램 등의 편성 비율은 방송법 및 동 시행령에 의거하되, 특히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태동에 근거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편성 비율의 조화를 추구한다.

|  |                |      |            |
|--|----------------|------|------------|
| <br>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br><b>KOREA DMB, Inc.</b> | <b>회 사 규 정</b> | 문서번호 |            |
|  |                | 개정번호 | 01         |
|  | <b>편 성 규 약</b> | 개정일자 | 2006.02.24 |
|  |                | 제정일자 | 2006.02.24 |

2. 주시청시간대에 보도 및 교양, 교육프로그램을 가급적 많이 편성하여 오락프로그램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3. 주시청 시간대에도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급적 최대한 편성한다.
4. 가족시청 시간대에 가족전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의 프로그램은 방송하지 않는다.
5. 프로그램 내용상 특별히 혐오감을 유발하는 장면이 포함되거나 성인대상 프로그램 중 어린이와 청소년에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프로그램 방송 개시전에 반드시 그러한 내용임을 고지한다.


## 제 2 장 방송제작자의 책무 및 권리

### 제 7 조 (방송제작자의 공적 책무)

1. 방송제작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2. 방송제작자는 방송물을 통해 민주적 여론형성과 평화통일에 이바지해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격차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방송제작자는 방송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방송제작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방송물을 제작하거나 사적인 이해를 방송물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 제 8 조 (방송제작자의 권리)

1. 방송제작자는 방송물 제작에 임하여 양심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2. 방송제작자는 회사의 편성·보도·제작상의 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회사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3. 방송제작자는 회사의 정기·부분 개편시 편성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                |      |            |
|--|----------------|------|------------|
| <br>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br><b>KOREA DMB, Inc.</b> | <b>회 사 규 정</b> | 문서번호 |            |
|  |                | 개정번호 | 01         |
|  | <b>편 성 규 약</b> | 개정일자 | 2006.02.24 |
|  |                | 제정일자 | 2006.02.24 |

4. 방송제작자는 상급자로부터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또는 사상적 신념에 반하는 방송물의 제작을 요구 받거나 편성을 요구 받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
5. 편성 또는 편집상 방송 예정이던 방송물이 당해 방송제작자의 의사에 반해 방송이 취소되거나 내용 또는 의미가 변형, 왜곡돼 전달될 경우 그리고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경우 방송제작자는 해당부서장으로부터 그 근거와 경위를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
6. 방송제작자는 사회적 정의와 진실에 근거한 사실의 은폐나 삭제를 강요 받지 아니 한다.
7. 방송제작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조직변경이나 상급자의 인사이동 및 방송물 제작과 관련된 예산편성의 변동을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
8. 편성·보도·제작 부문 총괄책임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의 구성원들은 소관회의를 열어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 제시할 수 있다.

### 제 3 장 프로그램 제작준칙

#### 제 10 조 (프로그램 제작준칙)

1. 회사와 조합은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방송제작자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 프로그램의 제작준칙을 만들어 시행한다.
2. (선거방송) 회사는 선거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제작시 정치적 중립과 균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정한 선거방송 보도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3. (토론프로그램) 회사는 토론프로그램 제작시 내용과 절차의 형평을 유지하고 공정한 여론 형성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정된 토론 프로그램 제작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4. (보도프로그램) 회사는 보도프로그램 제작시 우선 공정·정확해야 하며, 개인의 자유와 명예를 최대한 존중한다.
5. (교양프로그램) 회사는 교양프로그램 제작시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다 유익하고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  |                |      |            |
|--|----------------|------|------------|
| <br>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br><b>KOREA DMB, Inc.</b> | <b>회 사 규 정</b> | 문서번호 |            |
|  |                | 개정번호 | 01         |
|  | <b>편 성 규 약</b> | 개정일자 | 2006.02.24 |
|  |                | 제정일자 | 2006.02.24 |

6. (예능프로그램) 회사는 예능프로그램 제작시 건전한 국민정서 함양과 여가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을 밝고 윤택하게 함은 물론, 참된 윤리와 도덕성을 고취하여 건전한 생활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한다.

## 제 4 장 보 칙

### 제 11 조 (방송편성규약 등의 준수)

1. 방송편성규약과 프로그램 제작준칙은 회사의 구성원 모두가 준수해야 하며 사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회사에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외주제작자는 회사의 제작지침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한국 DMB”의 방송편성규약과 프로그램 제작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 제 12 조 (방송편성규약의 개정)

방송편성규약은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 부 칙

이 규약은 2006 년 2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